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

의안 번호 563

제 출 일 : 2024. 10. 10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○ 2025년도 남양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관계법령

- ○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6조
- 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3. 주요내용

- □ 사 업 명
 - 2024년 경기도 농업발전계정 출연 : 50백만원
- □ 목적 및 필요성
 - 농어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
 -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
- □ 출연금 개요
 - 현황
 - 현재까지 우리시 출연금액 : 2,216백만원(1989~2024)
 - '25년도 출연금액: 50백만원

- 시군 출연금 배정 : 도농복합시(16개) 50백만원 / 일반시(15개) 10백만원
- '24년도 추진실적: 90백만원(농어업경영자금)

□ 경기도 농업발전계정 지원 분야

-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
- 사업대상 :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
- 지원조건 : 연리 1.0%,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
- 지원한도: 100백만원 이내
- 자금사업 : 농지 구입, 시설현대화 등 기반 조성 자금

○ 농어업경영자금

- 사업대상 : 도내 주소지를 두고,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
- 지원조건 : 연리 1.0%.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
- 지원한도 : 농업인(6천만원), 농업법인(2억원) 이내
- 자금용도 : 일반농업, 축산업, 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

□ 기대효과

○ 농어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